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가단2283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울 담당변호사 정문선

변론 종결 2019. 12. 10.

판결 선고 2020. 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57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D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F은 2016. 6. 6. 00:30경 이전 피고 차량의 고장으로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창원기점 115km 4차로가 3차로로 합류하는 지점의 갓길(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G이 운전하는 H 견인차량이 출동하여 동료 I 과 함께 경광등을 켜고 피고 차량을 견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J은 2016. 6. 6. 00:30경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경고등이 깜빡거리자 고개를 숙여 확인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채로 4차로 도로표면에 합류구간 화살표시가 나타났음에도 4차로로 계속 가던 중, 4차로와 3차로 합류지점의 갓길(피고 차량의 앞·뒷바퀴가 차로 폭의 절반이상이 소멸된 4차로에 걸쳐있기는 하였으나 차체의 대부분이 갓길에 있었다)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오른쪽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왼쪽 후면부와 피고 차량 바로 앞에 있던 견인차량의 왼쪽 후면부를 연속적으로 들이받으면서 견인차량의 적재함 왼쪽에서 견인작업 중이던 G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G은 같은 날 03:30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9274)에서 2017. 6.26.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64,000원, 2017. 3. 9. 감정촉탁비용으로 514,800원 등 합계 3,878,800원을 지출하였고, 2017. 7. 6.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K, L에 게 합계 30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8,347,800원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에 관하여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11. 6.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8:2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협정의 당사자인 사실, 이 사건 협정 제18조는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9조에서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손해에 대한 보험금에 관하여 이 사건 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등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협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전치의무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소송법상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협정은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분쟁을 간이·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데 협정회사가 이 사건 협정 제18조가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제소한 경우 이를 각하하여 다시 처음부터 심의청구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협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심리·판결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재판에 있어서의 심급의 이익에 준하는 정도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협정은 협정회사가 제19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제18조의 심의청구 전치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이 사건 협정 제30조 제1호, 제31조)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이행확보수단을 별도로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가 비록 이 사건 협정 제18조에서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에 위반되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피고 차량 운전자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인 F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그 과실비율은 20%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61,575,760원 $[(304,000,000\text{원} + 3,878,800\text{원}) \times 20\%]$ 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설령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행지배가 견인작업을 수행하던 망인과 유상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 및 그 보험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2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1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1.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판단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3. 15. 선고 2011다74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사고 당시 피고 차량 후방에 삼각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을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사고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사고장소 양쪽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합류도로인 4차로 표면의 합류구간 화살표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날씨도 맑아 시야 확보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장소는 직선에 가까운 매우 완만한 곡선구간의 고속도로여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할 경우 사고지점이 쉽게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장난 피고 차량을 수습하기 위하여 이미 견인차량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확인되는 밝은 대형 경광등을 점등한 상태로 견인작업 중에 있었고, 위 경광등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때 쉽게 눈에 들어와 운전자들로서는 피고 차량이 견인작업 중이라는 사정을 충분히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 차량 부근에 삼각표지판이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 차량 부근에 삼각표지판이 설치되었다거나 피고 차량 전체가 완전히 갓길 위에 위치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차량 후방에 삼각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차량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지